



제339회 임시회

2015.04.22.

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

# 전문위원 검토보고

1. 충청북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 충청북도 학생 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정 영 수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2015년 04월 13일

○ 회부일자: 2015년 04월 14일

3. 제안이유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 및 교육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학부모 교육비 경감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4. 주요내용

가.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에 정함(안 제1조)

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다. 현장체험학습비 지원내용을 정함(안 제3조)

라. 지원대상자 및 범위를 정함(안 제4조)

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을 정함(안 제5조)

## 5. 검토의견

- 본 조례제정안은 관계법령<sup>1)</sup> 등에 따라 저소득층(차상위계층)학생에게 지원하던 현장체험학습비(수학여행, 수련활동)를 특수교육대상학생과 읍지역 이하 초·중학생까지 확대 지원함으로써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학부모교육비를 경감해 주고자 하는 것으로,
- 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목적을, 안 제2조 “지원 대상” 을 도내 공·사립학교 및 국립학교로 하고, 안 제3조 “체험학습” 은 수학여행, 수련활동으로 하며, 안 제4조 지원대상자의 범위, 안 제5조 매년 지원계획 수립 등 총 5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그간 추진실적 및 향후 지원계획은
  - 2011년부터 초·중·고·특수학교의 저소득층(차상위계층) 학생들에게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비<sup>2)</sup>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4년도의 경우 학생 8,213명을 대상으로 1,004,460천원을 지원하였음.
  - 조례가 제정되면,
    - 2015년도는 특수교육대상자, 면지역(초·중)학생, 저소득층(초·중·고) 학생 등 13,246명에게 1,488,110천원,
    - 2016년도부터는 읍지역(초·중)학생 포함 26,975명에게 2,654,600천원을 지원할 예정임

1) 저소득층학생: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 동법시행령 제104조의 2/ 특수교육대상학생: 장애인등에 대한특수교육법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읍이하 초·중학생: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 헌법 제31조

2) 수학여행비: 초 10만원, 중 11만원, 고 30만원, 수련활동비: 초 6만원, 중 7만원, 고 8만원

- 본 사업은 2010.7.26. 교육부의 수학여행·수련활동 제도개선 방안으로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참가비 지원』 방침에 따라 2015년 2월 현재 전국 7개 시·도에 조례제정<sup>1)</sup>이 되어있고, 15개 시·도에서 저소득층학생에게 수학여행비 또는 수련활동비를 지원하고, 그 중 6개 시·도에서는 일반학생을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음.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소득층 학생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과 읍지역 이하 초·중학생까지 포함하여 확대 지원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계층 간, 지역 간의 교육격차를 완화하여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1) 광주, 제주, 경남, 강원, 세종, 전북, 울산교육청

## 관계 법령 발췌

### □ 교육기본법

[시행 2015.1.20.] [법률 제13003호, 2015.1.20., 일부개정]

-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 초·중등교육법

[시행 2014.4.29.] [법률 제12338호, 2014.1.28., 일부개정]

- 제60조의4(교육비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교육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인 학생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3. 그 밖에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

###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시행 2015.2.1.] [대통령령 제25961호, 2015.1.6., 일부개정]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① 삭제 <2005.1.29>

- ②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 또는 학과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 ⑤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① 법 제60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교육비“라 한다)을 말한다.

1. 입학금 및 수업료
2. 학교급식비
3. 학교운영지원비
4. 교과용 도서 구입비
5. 가정에서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학습을 위한 교육 정보화 지원비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비용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2013.12.30.] [법률 제12127호, 2013.12.30., 일부개정]

제3조(의무교육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제24조에 따른 전공과와 만 3세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5.1.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9., 타법개정]

제3조(의무교육의 비용 등)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및 학교급식비로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비용 외에 학교운영 지원비, 통학비, 현장·체험학습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 사립학교법

[시행 2014.7.1.] 법률 제12125호, 2013.12.30.,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립학교“라 함은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를 말한다.

□ 국립학교 설치령

[시행 2015.2.3.] [대통령령 제26080호, 2015.2.3., 일부개정]

제8조(부설학교) ① 대학의 사범계 단과대학(이하 이 조에서 “사범대학“이라 한다), 교육대학에 **별표 5**의 학교를 부설한다. <개정 2009.9.3.>

[별표 5] <개정 2009.9.3>

대학 및 교육대학에 두는 부설학교의 명칭 및 위치

(제8조제1항관련)

학 교 명	부 설 학 교 명	위 치
강릉원주대학교	부설유치원	강 원 도
강 원 대 학 교	부설고등학교	강 원 도
경 북 대 학 교	부설초등학교 부설중학교 부설고등학교	대구광역시
경 상 대 학 교	부설중학교 부설고등학교	경상남도
공 주 대 학 교	부설유치원 부설중학교 부설고등학교	충청남도
부 산 대 학 교	부설고등학교	부산광역시
전 남 대 학 교	부설중학교 부설고등학교	광주광역시
전 북 대 학 교	부설고등학교	전라북도
제 주 대 학 교	부설초등학교 부설중학교 부설고등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충 북 대 학 교	부설중학교 부설고등학교	충청북도

학 교 명	부 설 학 교 명	위 치
공주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	충청남도
광주교육대학교	광주부설초등학교 목포부설초등학교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대구교육대학교	대구부설초등학교 안동부설초등학교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부산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	부산광역시
서울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	서울특별시
경인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전주교육대학교	전주부설초등학교 군산부설초등학교	전라북도
진주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	경상남도
청주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	충청북도
춘천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	강원도

#### □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시행 2015.2.3.] [대통령령 제26081호, 2015.2.3., 일부개정]

제9조(부설학교) ① 한국교원대학교에 다음 각호의 학교를 부설한다.

1. 부설유치원
2. 부설초등학교
3. 부설중학교
4. 부설고등학교